

# 「평창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」

#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조례안 개요

- 제 안 자 : 김성기 의원
- 제안일자 : 2026. 02. 25.
- 회부일자 : 2026. 03. 12.
- 상정일자 : 2026. 03. 13.

### 2. 제안이유

- 평창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 기념품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, 평창만의 특색을 가진 우수 기념품의 체계적인 보급 및 판매를 통해 관광수익을 창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군수의 책무(안 제3조)
- 위원회 설치 및 기능, 구성, 운영, 수당 등(안 제4조 ~ 안 제7조)

- 관광기념품 공모전 및 지정(안 제8조 및 제9조)
- 관광기념품 제작 및 판매(안 제12조)
- 판로개척 등 지원(안 제14조)

## 4. 검토의견

### 가. 관련 근거

- 「관광진흥법」 제4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 진흥을 위하여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### 나. 입법의 취지

-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을 통하여 관광기념품 다양화와 지역만의 특색있는 고유성을 확립하여 지역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관광 기념품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함.

### 다. 조례안의 주요내용

- 안 제3조에서는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지원을 위하여 시책 및 지원 계획이 수립·시행될 수 있도록 군수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,
- 안 제4조와 제5조, 제6조에서는 각각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, 운

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,

- 안 제8조에서는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,
- 안 제9조에서는 관광기념품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,
- 안 제10조에서는 관광기념품의 품질관리 등 확인·점검을 위한 사후관리 실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,
- 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각각 관광기념품의 제작 및 판매와 전시판매점의 설치·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,
- 안 제14조에서는 판로개척을 위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,
- 안 제15조에서는 관광자원 활성화 및 관광기념품 판촉활동을 위하여 관광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## 5. 종합검토의견

- 본 제정조례안은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활성화를 통해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,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**□ 관광진흥법****제48조(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) ① ~ ③ (생략)**

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,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6. 2. 3., 2023. 6. 20., 2025. 4. 8.>

1. 문화, 체육,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
2.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
- 3.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**
4.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
- 4의2.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에 관한 사업
5. 유희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
6.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